

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(총무위원회)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화순군수
- 나. 제출일자 : '96. 1. 8
- 다. 회부일자 : '96. 1. 8
- 라. 상정일자 : 제 4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('96. 1. 16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내무과장 이병일

나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(지방공무원
년차별 임용)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관리특별회계 요원 국가직 4명이
'96. 1. 1자로 지방직으로 전환하도록 지방 12200 - 1994 ('95. 12. 30)
호로 정원승인 되었으며,
- '95 조직진단 실시 결과에 따른 기술직(토목) 및 기능직을 군 및 읍면간
조정코자 함.

다. 주요골자

- 군본청란에
 - 양곡관리특별회계요원 국가직 4명(행정 6급 1, 행정 7급 1, 행정 8급 1,
농업 9급 1) 이 증원
 - '95 조직개편에 의하여 기술직(토목직) 3명, 기능직(전기, 필기) 3명이
증원되어
 - 군본청은 정원상 총 10명이 증원되고 읍면은 6명이 감원되었음

3. 검토보고 요지

- 동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(지방공무원으로 연차별 임용) 규정에 의한 양특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조정하고
- '95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기술직 및 기능직을 현실에 맞게 군 및 읍면간에 조정 개정하는 내용으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

4. 질의답변 요지

" 생 략 "

5. 토론요지

" 생 략 "

6. 심사결과

『 원안가결 』

7. 첨부 :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